## 건설원가의 특성과 설계예산건설원가라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두 광 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발전과 기본건설투자를 실현하는데서도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과학적인 라산에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을 깐지게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중보관 제15권 68폐지)

건설원가를 바로 타산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는것은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건설부문 기업소들의 경영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건설원가는 건설물의 시공 및 인도와 관련된 모든 지출을 화폐형태로 표현한것 이다. 건설원가는 건설의 공업화수준, 로 력, 설비, 자재의 합리적리용상태와 기술 장비도, 기업관리운영수준 등 기업소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종합 적으로 반영한다.

건설원가는 그 계산목적과 방법에 따라 설계예산건설원가, 계획건설원가, 실적건 설원가로 나누어진다.

설계예산건설원가는 설계기관의 설계작성단계에서 기준년도의 가격 및 원단위소비기준에 근거하여 타산하며 건설대상별로편성한 설계예산서의 직접비와 간접비로구성된다. 다시말하여 설계예산서에 계산된 건설 및 조립작업액에서 설계순소득을 뺀 나머지부분이다.

계획건설원가는 건설기업소가 계획작성 단계에서 설계예산건설원가에 준하여 계획 년도의 로력지출기준, 물자소비기준, 설비 리용기준에 기초하여 규정한 원가이다. 계 획건설원가는 리용하는 기준자료가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설계예산건설원가와는 일 정한 차이가 생기며 이 차이를 계획화하기 위하여 설계예산건설원가에 대한 원가저하 과제를 설정한다.

실적건설원가는 기업소가 대상건설이 끝나거나 일정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실지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계산하는 원가이다. 실적건설원가는 건설기업소가 건설물의 시 공과정에 실지 지출된 비용을 어느 년도의 가격으로 계산하는가에 따라 기준년도가격 으로 계산된 실적건설원가, 건설년도의 현 행가격으로 계산된 실적건설원가로 나누어 진다. 기준년도가격으로 계산된 실적건설 원가는 일정한 건설대상의 시공작업에 지 출된 비용을 기준년도가격으로 계산한것이 며 현행가격에 의한 실적건설원가는 기준 년도가격으로 계산된 실적건설원가는 기준 년도가격으로 계산된 실적건설원가는 기준

건설원가는 건설물창조과정의 특성으로 하여 원가계산의 대상, 측정단위, 구성항 목 등에서 공업생산물의 원가와는 다른 특 성을 가진다.

첫째로, 건설원가는 원가계산의 대상에 서 특성이 있다.

공업생산물의 원가계산의 대상은 완제품, 반제품, 부분조립품, 보조생산물이다. 기본건설이 일반적으로 공업생산에 비하여 생산주기가 긴것으로 하여 건설원가는 완공되는 대상에 대하여서만 타산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대상의 완공정도에 따라 세분대상별, 시공공정별로 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원가계산의 대상은 완공된 건설대상, 세분건설대상, 시공공정별공사(건축공사, 전기공사, 위생난방공사 등)이다.

기본건설대상들은 대체로 개별적성격을 띠며 대비성을 가지지 못한다. 공업생산에 서의 계렬생산제품들과는 달리 건설에서는 표준설계에 의하여 같은 구조와 규모를 가 진 건설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되는 위치, 지질구조, 수송조건, 건재의 리용, 시 공방법 등이 다르며 지출되는 비용도 같지 않다. 따라서 건설원가는 건설대상마다 설 계예산에 기초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된다.

둘째로, 건설원가는 원가계산의 측정단 위에서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업생산물의 원가계산의 측정단위는 생산물의 자연적속성을 반영하는 현물소재적인 측정단위자체를 쓰고있다. 그러나 건설물원가계산에서 현물측정단위는 공사, 구조물, 공정별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정해진다. 콩크리트, 몰탈, 토공작업, 구조물작업은  $m^3$ 으로, 미장작업, 유리작업, 도배, 장판 등은  $m^2$ 으로, 그밖의 작업대상들에 대하여서는 m, t, 장, 개 등에 의하여 표시할수 있다.

셋째로, 건설원가는 원가의 구성항목에 서도 특성이 있다.

공업생산물의 원가구성에서는 연료비, 동력비가 독자적인 구성항목으로 되여있지 만 건설원가에서는 그것이 독자적인 구성 항목으로 되여있지 않다. 그것은 건설물의 골조형성을 위한 생산용연료가 거의 없으 며 동력은 기계설비운영과 관련되여있기때 문에 기계운영비로 계산되는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건설원가에는 기본건설투자액가운 데서 설비비, 비품비, 기타건설비와 같은 항목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러한 비용들이 해당 건설물을 창조하는데 직접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건설원가의 구성항목에는 주로 자재비, 생활비, 건설기계운영비, 일반비가 포함된다.

건설원가를 타산하는데서는 설계예산건 설원가부터 바로 타산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선 설계예산건설원가가 계획 원가와 원가저하과제를 산출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리용되기때문이다. 설계예산건설 원가를 산출하는데 리용되는 공정별현물소 비기준은 기준년도의 기술수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였으므로 건설이 진행되는 시 기의 도달된 기술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준년도이후 이룩된 기술 발전, 로동생산능률제고, 선진적시공방법 의 도입에 의하여 원가를 낮출수 있는 예 비를 찾아내여 원가저하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획원가를 타산하게 된다.

그것은 또한 설계예산건설원가가 해당 건설물의 가격타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리용되기때문이다. 설계예산건설원가에 인민경제부문별로 제정한 수익성비률에 근거하여 타산된 사회순소득을 합하면 해당 건설대상의설계예산가격으로 된다. 설계예산가격은 건설물의 대금결제를 위한 인도가격으로 될뿐아니라 고정재산으로서의 완공된 건설물의규모를 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리용된다.그리고 건설부문 계획작성과 통계계산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설계예산건설원가타산에서 중요한것은 무 엇보다먼저 직접비를 바로 규정하는것이다.

직접비는 설계의 기술도면에 의하여 계산 된 작업공정별현물작업량에 설계의 요구와 선진적인 작업방법에 따르는 공정별원단위 예산기준값을 곱하는 방법으로 타산한다.

설계예산건설원가계산의 기초로 리용되는 설계예산편성용 공정별원단위예산기준 값은 공정별단위당 작업량을 수행하는데 드는 자재, 로력, 설비지출 및 소비기준에 현재의 도매가격, 료금 및 생활비기준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제정한다.

직접비에는 자재비, 건설기계운영비, 건설로동자들의 생활비가 포함된다.

직접비타산에서는 첫째로, 자재비를 기 준화의 요구에 맞게 바로 타산하여야 한다.

자재비를 기준화의 요구에 맞게 타산하 기 위하여서는 우선 자재소비량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재소비량은 순소비량(유효 소비량)과 추가소비량으로 이루어진다. 자 재의 순소비량은 건설물 혹은 건설물을 이 루는 공정별작업수행에 필요한 정미소비량 을 말한다. 순소비량은 주로 경험통계적, 기술기능화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리론적수 치, 정미중량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자재의 추가소비량은 시공과정

자재 순소비량 소비량 (유효소비량) (기술감모량, 경제감모량)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기술감모량과 경 제갂모량을 바로 규정하는것이다. 기술감 모량은 미장작업과정에 떨어지는 량. 흘리 는 량 등과 같은 소비량을 말하며 경제감 모량은 자재의 운반과 보관과정에 파손, 물리화학적변화, 류실에 의하여 생기는 손 실을 말한다. 이러한 추가손실량을 타산하 는데서는 감모비률을 옳게 규정하는 문제

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손실을 고려한 보충 적인 소비량으로서 기술공정상손실(기술감 모)과 경제조직적손실(경제감모)을 예견한 자재의 소비량이 포함된다.

이로부터 자재소비량은 다음과 같이 타 사하다.

추가소비량

가 중요하며 이것은 선진기업소의 지난 시기의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는 경험통 계적방법과 현대적기술수단들의 적용에 의한 기술기준화방법에 의하여 제정할수 있다.

경제감모비률에 따라 품종별자재의 경 제감모량과 감모비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다.

품종별자재의 = 품종별 × 경제감모기준(%)×수송 및 보관회수 경제감모량 = 자재총량 100

자재비를 기준화의 요구에 맞게 타산하 기 위하여서는 또한 원자재가격을 기준년 도 건설자재의 유일도매가격에 기초하여 타산하여야 한다.

그것은 설계예산편성사업을 합리화하고 건설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분석평가를 바로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자재비를 기준화의 요구에 맞게 타산하 기 위하여서는 또한 운반비규모를 정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건설자재운반비는 생산지로부터 건설대 상현장창고까지 나르는 과정에 지출된 비 용으로서 수송수단의 종류, 건설자재의 생 산지와 건설현장의 립지조건, 철길조건과 인입선리용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운반비규모타산에서는 평균운반비를 타 산하여야 한다. 그것은 개별적건설자재들의 운반비를 서로 다른 수송조건들을 고려하 여 개별적운반비로 타산하는 사업이 매우 복잡하고 실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정 과 관련되며 같은 자재에 대하여서는 같은 류통비를 정하고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이로부터 평균운반비를 타산하자면 짐 등급을 규정하고 t당 역출비와 t당 철도운 반비를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t당 역출 비는 생산기업소로부터 출발역까지 건설자 재를 내보낼 때 소비된 화물 t당 지출비용 (t당 자동차운임+t당 상하차비)이다. t당 철도운반비는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건설 자재를 기차로 운반하는데 소비된 t당 지 출비용(짐등급에 해당한 평균철도운임+t당 상하차비)이다. 같은 건설자재에 대한 t당 역출비와 철도운반비는 개별적생산기업소 들의 역출비와 철도운반비들에 대한 가중 산수평균으로 규정한다.

직접비타산에서는 둘째로, 기계운영비와

생활비를 바로 타산하여야 한다.

공업생산물의 원가타산에서는 로동수단의 마모와 관련된 몫으로서 감가상각비타산이 중요하지만 건설원가타산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기계운영비를 타산하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기계운영비란 건설물의 건설에 리용되는 건설기계설비들의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건설기계운영비는 해당 건설대상을 시 공하는데 필요한 건설기업소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운영비와 이동, 해 체 및 조립비, 다른 기업소에서 빌려다가 쓰는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포함하여 타산한다.

직접비타산에서는 기계운영비와 함께 생활비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생 활비규모타산방법에서 중요한것은 공사종 류별 단위당 생활비를 규정하고 그에 기초 하여 생활비규모를 타산하는것이다.

건설부문에서는 공업부문에서와 같이 건설물 단위당 생활비기준액을 설정할수 없다. 그것은 건설물은 생산주기가 길고 어느 하나도 꼭같은(투자규모, 생산능력, 구조형식) 건설물이란 없으므로 기준으 로 되는 건설물을 설정할수 없기때문이 다. 이로부터 건설원가를 타산하는데서 는 공사종류별 단위당 생활비를 규정하 고 그에 기초하여 건설대상별, 세분건설 대상별, 시공공정별생활비규모를 타산하 게 된다.

공사종류별 단위당 생활비란 공사종류 별 단위당 작업수행을 위하여 건설자들이 지출한 로동에 대한 보수이다.

공사종류별 단위당 생활비를 타산하기 위한 계산적기초는 공사종류별 단위당 총 로력수와 평균등급의 생활비이다.

공사종류별 단위당 총로력수는 유일로 동정량에 기초하여 직종별, 기능급수별로 현물정량과 시간정량에 따라 타산한다.

공사종류별 단위당 평균등급의 생활비 는 낮은 급수생활비기준액과 높은 급수생 활비기준액을 타산하여 정할수 있다.

공사종류별 단위당 공사종류별 단위당 평균등급의 생활비 총로력수 생활비

설계예산건설원가타산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간접비를 바로 타산하는것이다.

간접비는 건설조립공사에 간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건물, 구축물, 시설 물의 건설 및 조립공사에 공동으로 드는 기업소경영활동전반과 관련한 비용들이 포 함된다.

간접비는 행정관리비와 기타 간접비로 구분한다. 행정관리비에는 간접로력의 생활비와 가급금, 려비, 사무비, 통신비, 건물 및 수도사용료, 난방비, 조명비, 비품비, 도서비, 수송수단유지비 등이 포함되며 기타 간접비에는 건설로동자들의 추가생활비, 문화사업비, 로동보호비, 합숙유지비 및 운영비, 기술문건준비비, 기술향상비 등이 포함된다.

간접비규모타산에서는 우선 정확한 기준에 기초하여 간접비를 배분하여야 한다.

간접비는 건설대상의 건설조립로력수에 비례하여 규정하거나 직접비에 비례하여 타산할수 있다. 건설대상의 건설조립로력 수에 비례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간접비규 모를 건설물의 건설조립공사에 필요한 총 로력공수에 한공수당 간접비기준을 급하여 얻는 방법이다.

간접비= 건설조립 한공수당 총 로력공수 \* 간접비기준

이 방법은 산로동지출에 비례하여 간접비 규모를 타산하게 하며 건설대상 총 건설조립 로력수와 간접비를 대비하게 함으로써 간접 비지출규모를 정확하게 타산할수 있게 한다. 간접비규모타산에서는 또한 간접비기준에서 건설대상들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간접비규모를 전반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간접비기준에서 건설대상들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야 하는것은 건설부문들사이, 건설대상들사이, 류사한 성격을 따는 건설대상들사이의 간접비기준에서 지나친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간접비규모를 전반적으로 낮추는것은 비생산적지출을 줄여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기업소의 수익성을 높여 국가축적을 늘이게 한다. 간접비의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이기 위하여서는 비생산적인 관리기구를 간소화하고 건설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철저히 제도화, 정규화하며 재정총화결과들을 종업원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대중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건설원가를 항목별비용지출에 기초하여 바로 타산하는것은 기본건설부문에서 있는 자재와 설비, 로력을 가지고 더 많이 건설하여 축적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